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이호대 의원 외 9명
- 의안번호 : 제409호
- 발의일자 : 2019년 2월 1일
-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2. 제 안 이 유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유료 공원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인용 법령의 표기 오류를 수정함 (안 제20조제1항제5호).
- 나.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사자 가족의 공원 입장료를 면제함 (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조례 개정안은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입장료를 부과하는 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의사상자 현황과 지원의 범위

- 의사상자(義死傷者)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본인과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을 정하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의사상자는 804명이고,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146명, 경기도 150명임.

- 의사상자 등 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 박물관 및 수목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첨부 1 참고)
-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특별 위로금 지급과 기념포석을 설치하는 것에 불과함.

2) 입장료 부과시설과 면제 기준

- 서울시 공원 중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공원의 동물원과 테마가든이 유일하며, 2019년 3월 현재 서울식물원 입장료 부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
- 공원의 입장료는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20조제1항에는 입장료 면제 대상, 제2항에는 입장료 감면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첨부 2 참고)
- 동 조례 제20조제1항을 살펴보면 국민, 외교사절단,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조사연구자 등 공무수행하는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의사상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안 제20조제1항제8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원 입장료 면제해주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그 뜻을 기리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구분과 구별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제20조제1항제5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용 법령의 표기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수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 다만 동 조례 제12조제3호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표기된 것이 있는 바, 이것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건축법 시행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첨부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첨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6.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7.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2.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3. 30명 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별표 1] 공원입장료(제15조제1항 관련)

공 원 별		사용기준	금 액(원)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3,000~6,000 2,000~4,000 1,000~2,000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4,000 1,500~3,000 1,000~2,000
※(주) ○ 어린이 : <u>6세 이상 12세 이하</u>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첨부 3) 푸른도시국 의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조례(안) 개요

○ 발 의 자 : 이호대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구로2) 대표발의('19. 2. 1.)

○ 제안이유

-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상자가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동물원의 유료 공원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의사상자(義死傷者)〉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부상(1~9등급)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요내용

- 인용 법령의 표기 오류 수정(안 제20조제1항제5호)
-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공원 입장료 면제(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 검토의견 : 원안가결

○ 안 20조제1항제5호 : 수용

- 인용 법령의 표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

현 행	개 정 안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안 20조제1항제8호 : 수용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의 공원입장료 면제 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의사상자 현황 및 세입감소 예상내용〉

- ◆ 의사상자 현황('18.12.기준) : 전국 804명(서울 146명, 경기 150명)
- ◆ 시의회 비용추계 결과,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146명)로 가정 시, 연인원 6,720명, 연 33,600천원 세입감소 예상
 - 의사자 유족 3명, 의상자(1·2급) 1명 및 활동보조자 1명, 의상자 가족 3명 방문
 -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 각각 연 6회 방문 가정
 - ※ 전국 의사상자(804명)를 대상으로 적용 시, 연인원 총 35,664명, 연 178,320천원 세입감소 예상
 - ※ 2018년도 서울대공원 유료입장객 1,468천명, 입장료수익 5,640,094천원

- 또한 의사상자들의 국가유공자와의 동일혜택 요구 민원도 제기되어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와의 동일한 면제 혜택 부여 필요**

※ '18년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된 국가유공자수 10,661명, 연 53백만원 혜택(어른입장료 5천원 적용)

- 다만, **적용대상 범위**를 서울시 거주 의사상자로 제한할 경우, 지역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고, 현행 조례에서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이 적정함**

현행	개정안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